



2학기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전해드리니 참조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학생은 등교 중지 ▣

1.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등교 중단, 정해진 기간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
 - *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분리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 중단 (동거인이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 할 경우, 동거인의 검사결과 자료 학교에 제출.)
 -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4. 발열(37.5℃ 이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중단
 -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와 함께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을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5.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제5판) ▣ 2021. 8. 4.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2개 모두 제출해야함.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아래 예시참고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예시) 8.23-9.7일까지 동거인 자가격리 기간일 경우 / 등교희망 날짜 : 8.23

21일	진단검사시행	22일	결과 확인 될 때까지 등교중지	23일	음성일시 등교가능 하교 후 진단검사 시행해야 함.
24일	검사결과 대기중이지만 등교가능	25일	음성일시 등교가능 하교 후 진단검사 시행	26일	23일과 동일함.

* 자가격리 기간이 끝날 때 까지 2일에 한번씩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2021년 8월 23일

보 인 고 등 학 교 장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운영 안내

○ 신고내용: 금품요구·수수 등 부패행위, 부정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침해행위

○ 신고방법

- 이 메 일: cleanedu@sen.go.kr

- 신고전화: ☎1588-0260(* 위 신고내용이 아닐 경우 학교로 문의)